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9. 3.

발 의 자 : 박 세 채 외 10명

1. 제안이유

침체된 경기회복 및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 산업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시책 개발
-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지도단속과 개선대책 강구
- 지역건설업체 수주 증대

나.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과당 경쟁 지양과 건설부조리 근절
- 부실 설계·시공 방지와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

다. 지역 건설산업체의 등록 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정례화 (안 제5조)

라.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58호)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은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지역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지원 및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 등록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2008.2.29>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명

의원명	서명	날인
김도원	김도원	
박재근	박재근	
홍서기	홍서기	
정지현	정지현	
박비영	박비영	
이강철	이강철	
김영호	김영호	
정영근	정영근	
박재근	박재근	
한정우	한정우	
허복	허복	